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5. 12.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2202048	정부	2024.7.22.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2024.9.2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
2204657	김병기의원	2024.10.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2.)
2208742	김한규의원	2025.3.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8.26.)
2214316	이양수의원	2025.11.17.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11.24.)

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11.25.)에서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25.11.27.)는 위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상이등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제대군인 등(이하 “제대군인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의료지원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제대군인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취업지원실시기관이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는 각

기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외 제대군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의 법률구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제대군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제대군인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단 등은 제대군인의 근무경력에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제대군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20조 및 제23조의2 등).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보훈병원에”를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보훈병원이나”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으로 한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제20조의3 전단 중 “보훈병원에서의”를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로, “보훈병원”을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으로 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에게”를 “과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제5항 및 제26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호봉 및 임금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그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무경력을 재산정한다.

제3조(공공단체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6조(채용 시 우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호 또는 제33조의2제2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 또는 고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군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의무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경력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0조(의료 지원) ① 국가는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	제20조(의료 지원) ① ----------

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처(傷痍處)(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
<신 설>	1.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신 설>	2.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신 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

	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신 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④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국가는 제20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제20조제2항에 따른 진료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0조의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의----------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 ------.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제18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23조의2(법률구조 지원) ① ----------과

에게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법률구조를 지원할 수 있다.	임무의 성격,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대군인에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적용제외) 제대군인으로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6조(적용제외)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채용 시 우대 등의 지원	3. ----------제4항까지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